

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지역내 테러, 적의 침투, 국지 도발, 전면전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은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음(안 제9조 단서신설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

가.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

나.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7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 : 입법예고 의견없음(2009. 11. 30 ~ 12. 21)

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2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울산중부소방서장

제2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회의”를 “협의회의 회의”로,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회고,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협의회의 심의사항”을 “협의회 기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통합방위협의회”를 “협의회 및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회의”를 “실무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칭하고,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원본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신, 홍보”를 “통신 및 홍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”를 “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지체 없이”로, “체제자”를 “체류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타종, 경적, 신호기의 계양”을 “타종, 경적 및 신호기의 계양”으로 한다.

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와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)</p> <p>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하되, 의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9.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<단서 신설></p>	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)</p> <p>①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-----1명 -----15명 이내의 위원으로 ----- ----- -----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울산중부소방서장</p> <p>9. 그 밖에-----</p> <p>③ -----해당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
<p>제3조 (협의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3조 (협의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협의회의 회의-----출석으로 개의하고,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협회의 심의사항)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협회의 기능) 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2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제5조(간사) ① 협의회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분야별 업무담당 과장 또는 군부대 장교가 된다. 다만,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 간사가 총괄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간사) ①----- ----- -----1명----- ----- -----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 ④ (생략)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해당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-----출석으로 개 의 하 고,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</p> <p>②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동원, 재정, 건설, 수송, 의료·구호, 통신,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,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(동단위 지원본부 포함한다)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통신 및 홍보----- -----.</p> <p>③ 그 밖에----- -----.</p>
<p>제8조(대피명령)①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의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고 인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나 체재자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대피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타종, 경적, 신호기의 계양</p>	<p>제8조(대피명령) ① 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 된 때에는 지체 없이 ----- ----- -----체류자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따른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타종, 경적 및 신호기의 계양</p>
<p>제9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</p> <p><단서 신설></p>	<p>제9조(운영규칙)----- ----- ----- -----다만,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4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. 2. 9(화)
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2. 11(목)

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2. 22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전병수 총무국장)

○ 지역내 테러, 적의 침투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

○ 이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
의장은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 단서신설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